

2) 예산조치: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

3) 협의

- 보건복지부(사회보장조정과)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

· 협의 완료[사회보장조정과-318(2026. 1. 21.)호]

→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

→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보상금·상한제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

4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6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~제2조) C형간염 정의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, 확진자는 HCV RNA 검사에서 양성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며,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경구용 치료제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함.
- (안 제3조~제4조) 지원 대상을 56세 국가건강검진 확진자 중 계속 거주자로 한정하고, 1인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여 범위와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5조)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,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중복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6조~제7조) 신청 기한을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하고,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와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, 관계 법령 및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·협업 절차를 반영하고 있어 법적·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